

제 호

영 치 증

○ 성 명:

○ 주 소:

○ 자동차의 종류:

○ 자동차의 등록번호:

1. 위 자동차는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.

2.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 종합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 영치증을 시(군·구) 과(팀)에 제시하면 즉시 영치를 해제합니다.

3.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0조제4항·제84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바목에 따라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○ 영 치 일 시: 년 월 일 시 분

○ 단속 공무원

소 속: 시(군·구) 과(팀) 성 명: (인)
(전화번호:)

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